

#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01
----------	-----

2021. 9. 14.(화)  
정책복지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1년 8월 25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8월 27일

라. 상정일자 : 2021년 9월 3일

-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수정가결)

##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용호 보건복지국장)

가. 제안사유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21.3.23.)에 따라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 조례 제명을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로 변경
-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시행 관련 사항 규정(안 제4조)
-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운영 등 근거 마련(안 제5조~제12조)
-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실적 보고 등(안 제13조~제18조)
-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사업의 지도·감독(안 제19조)
- 협력체계 관련 사항 규정(안 제20조)

## 3. 검토보고 요지 (김주희 수석전문위원)

### 가. 제출배경

- 본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일 2021. 9. 24.)에 따라,
  -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한 현행「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시행,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3조에서는, 보건의료 서비스<sup>5)</sup>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해 국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과 공공보건의료 사업<sup>6)</sup>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sup>7)</sup>에 대한 행정적·

5)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 2.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2.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나.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다.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과 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 관리, 건강 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  
라. 그 밖에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보건의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7)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4.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보건의료기관

나.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다. 제14조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함.

- 안 제4조에서는,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연 단위 시행계획 수립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제4조제4항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며,
  - 안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한, “시행계획 수립 시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것임.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5조의2에 따른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3항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는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 본 위원회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으로,
  - 법 제5조의2제3항에서 위원회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에 따른 것으로 타당함.

라.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마. 제14조의2에 따른 책임의료기관

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

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 및 제30조의3에 따른 지역외상센터

아. 「암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

자.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 안 제6조(위원회 구성)의 당연직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2021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2021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안내(보건복지부) 13쪽**

(예시)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 당연직 위원(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장, 필수보건의료 관련 정부지정센터장, 보건소장,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공공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등)

- 안 제12조(적용)에서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위원회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회의 공개, 위원회 운영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항 없이 기존 조례를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문제가 없음.
- 다만, 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위원회 관련 조항들 중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첫째**, 안 제6조(위원회 구성)에서, 위촉직 위원의 위촉 권한 행사의 주체에 대한 규정이 부재함.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바,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성이 있음.

조례안	수정안
제6조(위원회 구성) ③ <u>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u>	제6조(위원회 구성) ③ <u>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u>

- **둘째**, ‘법령입안심사기준(법제처)’에 따르면,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설치, 기능,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등의 순서로 규정토록 하고 있음. 이에 안제9조(위원회의 기능)는 조문 배열 상, 제5조(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설치) 바로 다음에 위치하는 것이 타당한 바, 조 위치를 바꾸고 조 번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성이 있음.

조례안	수정안
<u>제6조(위원회 구성)</u>	<u>제6조(위원회 기능)</u>
<u>제7조(위원회 임기)</u>	<u>제7조(위원회 구성)</u>
<u>제8조(위원장의 직무)</u>	<u>제8조(위원회 임기)</u>
<u>제9조(위원회 기능)</u>	<u>제9조(위원장의 직무)</u>

- 셋째, 안 제10조(위원회 회의)에서는, 정기회의에 대한 규정이 없고, 제1항에 따라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에만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 본 위원회는 법에 따른 의무설치 위원회로 기능상 매년 수립되는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고 있어 최소 연 1회 이상의 정기 회의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바,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성이 있음.

조례안	수정안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u>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u>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u>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u>

- 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는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 기능, 구성, 위탁 운영, 사업계획 승인 및 실적 보고, 자료협조 요청,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으로 법적, 내용적 문제가 없음.
- 안 제20조는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의료기관 및 관련 유관기관 등과 상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며,
- 안 제21조는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한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한 포상 내용을 규정한 것임.

####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한 것으로 법적, 내용적으로 타당하고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음. 다만, 앞 서 지적한 수정 필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요구됨.

4. 질 의 및 답 변 요 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7. 수 정 안 요 지

##### 가. 수정이유

- 조문 배열 조정 및 필요한 규정 내용을 포함함.

##### 나. 수정 주요내용

- 안 제6조제3항에 위원의 위촉 권한 행사 주체에 대해 규정함.
- 안 제9조를 제6조로 옮기고,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9조로 함.
- 안 제10조제1항에 정기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8.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및 조문 대비표
-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 포함)」



#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2021년 9월 03일

제안자: 이상욱 의원 등

## 가. 수정이유

- 위촉직 위원에 대한 위촉 권한행사 주체에 대한 규정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에 대한 성별 고려 규정을 적시할 필요성이 있고,
  - 조문배열 상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 다음에 위치하는 것이 타당하며,
  - 위원회의 정기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나. 수정 주요내용

- 안 제6조제3항에 위원의 위촉 권한 행사 주체에 대해 규정함.
- 안 제9조를 제6조로 옮기고,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9조로 함.
- 안 제10조제1항에 정기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안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안 제7조를 제8조로 하며, 안 제8조를 제9  
조로 하고, 안 제9조를 제6조로 한다.

안 제7조(중전의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  
직 위원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  
촉한다.

안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p><u>제6조(위원회 구성)</u>                      ①, ② (생략)                      ③ <u>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u></p>	<p><u>제7조(위원회 구성)</u>                      ①, ② (개정안과 같음)                      ③ <u>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u></p>
<p><u>제7조 (생략)</u></p>	<p><u>제8조 (개정안과 같음)</u></p>
<p><u>제8조 (생략)</u></p>	<p><u>제9조 (개정안과 같음)</u></p>
<p><u>제9조 (생략)</u></p>	<p><u>제6조 (개정안과 같음)</u></p>
<p>제10조(위원회 회의) <u>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u>                       ②, ③, ④ (생략)</p>	<p>제10조(위원회 회의) <u>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u>                      ②, ③, ④ (개정안과 같음)</p>

##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포함)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충청북도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의료서비스”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공공보건의료”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공보건의료사업”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5.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해 도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도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관할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당연직 : 충청북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충북권역응급의료센터장, 충북권역외상센터장, 충북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장, 충청북도소방본부장, 권역책임의료기관장, 지역책임의료기관장, 충북지역암센터장, 충청북도감염병관리지원단장, 청주시서원보건소장

2. 위촉직 :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 그 밖에 공공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회 임기)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적용)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3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기술적 지원 및 의료 자원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14조(지원단의 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2.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3. 의료인력 DB구축을 통한 의료취약지 인력 지원
4.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종사자 교육·훈련
5. 공공보건의료 자원 및 실적 통계 관리 및 모니터링
6. 공공의료기관 운영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7.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지원
8.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보건의료 사업 발굴
9. 도민 교육 프로그램, 연구조사 등을 통한 도민 참여 기반 구축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지원단의 구성 등) ① 지원단은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최소 6명 이상의 연구원과 행정요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고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6조(지원단의 위탁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단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지원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사업계획 승인 및 실적 보고) ①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해당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연도 사업 추진 실적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외에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제18조(자료협조 요청 등) ① 지원단장은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시행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보의 제공을 제한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원단장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④ 지원단장은 제공받은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19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의 해당 사업에 대한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련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한 사업수행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때 의료기관 및 관련 유관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21조(포상)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보건의료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

### □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정의) 2.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단기 공급대책
3.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

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나.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다.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과 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 관리, 건강 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

라. 그 밖에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보건의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3.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4.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보건의료기관

나.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다. 제14조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

라.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제4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5조의2에 따른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과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위원회는 해당 시·도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 시·도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 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조사·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제2조제4호라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련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지원
2. 관할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 사업 수행
3.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한 기술 지원
4. 그 밖에 관할 지역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등 필요한 사항

#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개최 및 운영
- 공공보건의료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등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 심의

##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북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운영

## 3. 관련조문

- 안 제6조(위원회 구성), 안 제11조(위원회 수당)

## 4. 비용 추계결과

- 가. 재정수반요인 : 충청북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운영 수당 지급
- 나. 추계의 전제 : 2021년 위원회 참석수당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산출기초	비고
위원회 수당	1,200	- (출석수당) 12명×100천원×1회	

- 다. 추 계 결 과 : '21년부터 향후 5년간 총 6,000천원 정도 소요
- 라.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세 출	6,000	1,200	1,200	1,200	1,200	1,200
위원회 수당	6,000	1,200	1,200	1,200	1,200	1,200

※ 정책기획관 위원회 POOL 수당에서 지급

## 6. 작성자 :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장 우경수